

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25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05. 19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·공포(2004. 4. 20)됨에 따라 수도관련업무가 건설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- 현행 수도사업의 관리자를 “건설국장”에서 “수도환경사업소장”으로 조정함
(안 제4조).

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수도환경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후
제4조 (관리자의 지정)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,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. ②관리자는 <u>건설국장</u> 으로 보한다.	제4조 (관리자의 지정) ①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수도환경사업소장</u> -----.

2004년 5월 31일 (월)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검 토 보 고 서

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전 문 위 원 채 우 병

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·공포(2004. 4.20)됨에 따라 수도관련 업무가 건설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현행 수도사업의 관리자를 “건설국장”에서 “수도환경사업소장”으로 조정함
(안 제4조)

□ 검토의견

동 개정 조례안은 2004. 4. 20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(업무)의 규정에 의거 수도관련업무가 건설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른 동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중 “건설국장”을 “수도환경사업소장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